#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8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이주환·유상범·권명호

이 용・최승재・정희용

최형두 • 배현진 • 김성원

전주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 아동"정보에 대해 지자체와 학교 간 공유·협조 체제가 전무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발견 및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

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창녕 학대 소녀", "천안 학대 소년" 등과 같이 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신속히 가정으로"를 "가정으로"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 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 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으로--야 하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② (생 예방 및 지원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략)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를 교육부장관과 공유하여야

	<u>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